

# 체육인 윤리강령

제정 : 2015. 4. 30.

## 전문

우리 휠체어러버비인은 대한장애인력비협회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휠체어러버비 발전을 위하여 뜻을 같이 한 것에 큰 공지와 자부심을 갖는다. 우리는 정치, 종교, 사상, 자본 등 외부 세력으로부터 휠체어러버비의 독자성과 순수성을 지켜 나아가며 어떠한 경우에도 휠체어러버비가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국민과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중증장애인의 재활과 사회로써의 활동을 추진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면서 지속적인 경기력 향상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여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정정당당한 경쟁과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장애인스포츠의 이상을 생활 속에 실천하며 철저한 자기 절제, 인격 수양, 건전한 상호 경쟁을 통해 비리와 부정이 없는 깨끗한 휠체어러버비를 이루고 존경 받는 장애인스포츠인이 되도록 노력한다.

## 제 1 장 휠체어러버비 고유 가치에 대한 존중

제 1 조(휠체어러버비의 고유 가치 구현) 휠체어러버비의 생명은 경기 규칙을 공정하게 적용하며 정당한 방법으로 경쟁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우리는 휠체어러버비인으로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일상생활을 할 때에도 이 정신을 구현함으로써 스포츠의 궁정적 가치를 드높여야 한다.

제 2 조(휠체어러버비의 독자적 위상 확립) 우리는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휠체어러버비를 이용하여서는 안 되며, 활동의 문호를 개방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 세력의 간섭을 받지 않는 독자적 위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 3 조(과도한 승부욕의 자제) 우리는 승리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정도를 벗어난 경쟁을 경계하여야 한다. 특히 승리에 집착하여 금지된 약물을 복용하거나 복용케 하는 행위, 인격 존중과 상호 신뢰가 결여된 상태에서 행하는 과도한 훈련 또는 이 과정에서 행해질 수 있는 폭력 행위 등을 철저히 배격하여야 한다.

제 4 조(기회의 균등) 우리는 휠체어러버비에 참여하는 모두에게 페어플레이 정신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지위, 연령, 성별, 인종, 지역, 신체 장애 등에 근거한 어떠한 차별도 용인하여서는 안 된다.

## 제 2 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훨체어럭비인의 역할

제 5 조(건전한 훈체어럭비의 보급) 우리는 장애인 체육의 활발한 진흥과 참여 운동을 펼쳐 훈체어럭비를 통한 장애 인식 개선을 함양하며 명랑하고 활기찬 사회 분위기 조성에 힘써야 한다.

제 6 조(우수한 경기력의 유지) 우리는 성실한 훈련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기술과 체력을 같고 닦아 항상 우수한 경기력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 대회에서 승리함으로써 국위를 선양하고 국민 단합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 7 조(국민에 대한 봉사) 우리는 국민 모두가 훈체어럭비를 즐기고 사랑하는 주체임을 인식하고, 훈체어럭비와 관련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훈체어럭비에 대한 이해를 높여 가며, 관련 법규와 전문 지식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성실하게 봉사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제 8 조(자연과 환경 보호) 우리는 자연환경이 인간의 삶의 터전이며 훈체어럭비 활동의 무대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여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자연보호 운동에 앞장서서 깨끗한 지구 환경을 후세에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제 3 장 존경받는 체육인 상의 정립

제 9 조(건전한 조직 문화의 형성) 우리는 상대방의 권리와 의사를 존중하고 그들의 처지를 세심하게 배려하여 성숙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조직 운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분파의 조성과 비민주적 다툼을 경계하며 의견 충돌이 있을 때는 물리적 힘이 아닌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의 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 10 조(권한 남용과 금품 수수 등의 방지) 우리는 자신이나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권리를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특히 업무 수행과 경기 심판 또는 각종 회의 활동 등에서 결정권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을 편들거나 금품수수, 향응 및 각종 편의를 제공 받아서는 안 된다.

제 10조(사회 구성원의 의무 준수) 우리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추구하는 훈체어럭비의 건전성을 사회 각 분야에 전파할 책임을 지닌다. 사회 풍토를 흐리거나 부패를 초래할 수 있는 불건전한 행위를 삼가며, 사회 구성원이 지켜야 할 의무를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다른 구성원에게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11조(객관적 윤리관의 정립) 우리는 자신의 관점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행위라도 조직의 명예에 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도덕적 불감증을 경계하여야 한다. 자신의 도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하고 점검하여 객관적 윤리관을 정립함으로써 존경 받는 훈체어럭비인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 제 4 장 휠체어리비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12조(체육윤리위원회의 설치) 이 강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한체육회 안에 체육윤리위원회를 두며, 법제상별위원회가 이를 대신 할 수 있다.

제13조(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이 강령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이러한 행위를 목인하는 사례가 생기는 경우를 보면 누구나 체육윤리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으며, 체육윤리위원회는 체육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체육윤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체육윤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 부 칙(15.00.00.)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